

경상북도



선	기관(부서)의 장
람	

제6982호 2025년 11월 10일(월)

경 상 북 도

■ 고 시

- 창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인가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5-430호) 5

회								
람								

발행인:경상북도지사 편집:대변인실

-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접도구역 지정(변경), 군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등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5-431호) 7
- 수동지구(준설)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시행계획승인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5-432호) 22
-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5-434호) 25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신규, 변경)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5-435호) 29

■ 공 고

- 도로공사 시행허가 내용 공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5-2171호) 33
- 사방사업 토지사용통지 공시송달 공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5-2181호) 34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처분 공시송달 공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5-2183호) 36
- 전력시설물의 설계업, 감리업 등록 공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5-2184호) 38
- 경상북도 행정규제 혁신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5-2190호) 39
- 공정한 경쟁 유도를 위한 2개 경상북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5-2191호) 56

시 군

■ 고 시

- 도시계획시설(영주댐 하류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영주시 고시 제2025-159호) 62
- 영주 휴천지구 도시개발구역(변경),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변경) 인가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영주시 고시 제2025-179호) 72
- 영주 도시관리계획(도로 등)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영주시 고시 제2025-180호) 91
- 경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완충녹지) 결정(부분)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경산시 고시 제2025-147호) 93
- 청도 군관리계획(환경기초시설:하수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청도군 고시 제2025-109호) 97
- 청도 군관리계획(방재시설:유수지)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청도군 고시 제2025-110호) 99
- 고령 군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경미한 변경), 실시계획(변경)
인가 및 지형도면 등 고시
(고령군 고시 제2025-1540호) 102
- 칠곡 군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칠곡군 고시 제2025-189호) 105

■ 공 고

- 경주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공사완료 공고
[용황지구 내 일부구간 보도확장 공사]
(경주시 공고 제2025-3076호) 111



경 상 북 도

고 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5-430호

창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 인가 고시

「하수도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을 다음과 같이 인가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10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사업목적

본사업은 성주군 가천면 창천리 일원에서 발생하는 생활오수가 미처리 상태로 방류되어 인근 하천으로 생활하수가 유입됨에 따라 수질오염 등이 우려되므로, 하수도 정비사업을 시행하여 공공수역의 수질개선, 지역주민 주거환경 개선 및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인가내용

가. 사업시행자 및 주소

- 사업시행자 : 성주군수
- 주 소 :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주로 3200

나.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부지면적 등

시 설 명	위 치	부지면적 (㎡)	시설용량 (㎡/일)	처리공법	처리구역 면적(k㎡)
창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성주군 가천면 창천리 403번지 일원	4,055	100(증설)	FA-SBR	0.93

다. 사업시행기간 : 2025년 ~ 2028년

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토 지 소 재 지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주소	소유자	비고
시군	읍면	리	지번						
성주	가천	창천	401	잡	1,598	1,598		성주군	
			403	잡	2,457	2,457			

마. 기타 관계서류는 성주군 상하수도사업소(054-930-6758)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고시 제2025-431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접도구역 지정(변경),
군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등 고시**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접도구역의 지정(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군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10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 노선 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 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km)
변경	국가 지원 지방도	88호선	하남~영양선	봉화군 춘양면 애당리, 석현리 일원	47,028㎡	봉화군 춘양면 애당리 68-6	봉화군 춘양면 석현리 643-2	봉화군 춘양면 애당리, 석현리	1.26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배고개 위험도로 구조개선공사에 따른 도로구역 변경

3. 접도구역의 지정(변경) 내용

도로의 종류	국가지원지방도	노선번호	88호선	노선명	하남~영양선
접도구역 또는 위치	○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으로 5m ○ 시점 : 봉화군 춘양면 애당리 68-6 ○ 종점 : 봉화군 춘양면 석현리 643-2				
접도구역 지정목적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피방지 ○ 도로의 미관 보존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 접도구역 지정 사유 - 배고개 위험도로 구조개선공사 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으로 인한 접도구역 지정				

4. 준계획시설 결정(변경) 내용

○ 교통시설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 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1(국지88)	8~25	보조 간선 도로	12,447	서동리 54-2	서벽리 684-4	일반 도로	-	경상북도고시 제2010-601호 (2010.12.27.)	
변경	소로	2	1(국지88)	8~25	보조 간선 도로	12,429	서동리 54-2	서벽리 684-4	일반 도로	-	-	

5. 실시계획인가

- 사업시행지의 위치 : 봉화군 춘양면 애당리, 석현리 일원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
 - 명칭 : 배고개 위험도로 구조개선공사
- 면적 또는 규모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결정	소로	2	1(국지88)	8~25	보조 간선 도로	12,429	서동리 54-2	서벽리 684-4	일반 도로	-	경상북도고시 제2010-601호 (2010.12.27.)	
시행	소로	2	1(국지88)	8~25	보조 간선 도로	1,260	애당리 68-6	석현리 643-2	일반 도로	-		

6.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도로구역결정일 ~ 2028년 12월 31일

7.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소 :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성명 : 경상북도지사(경상북도북부건설사업소)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붙임)

9.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사업기간 내
- 열람장소 : 경상북도 도로철도과(☎054-880-3983)

경상북도북부건설사업소 도로정비과(☎054-850-3291)

10. 지형도면 :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e음(<http://www.eum.go.kr>)에서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열람이 가능하며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별도 도면 게재는 생략합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 시행자 : 경상북도지사(경상북도북부건설사업소)
- 사업의 종류 : 배고개 위험도고 구조개선공사
- 사업 지역 :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애당리, 석현리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합계				104필지	47,028						
1	봉화군 춘양면 애당리	68-6	전	147	147	박**	봉화군 춘양면 애당리 ***				
2	봉화군 춘양면 애당리	69-1	도	1,981	1,306	공	경상북도				
3	봉화군 춘양면 애당리	산49-1	도	604	245	공	경상북도				
4	봉화군 춘양면 애당리	856	도	3,091	1,553	국	국토교통부				
5	봉화군 춘양면 애당리	73-3	도	63	49	공	경상북도				
6	봉화군 춘양면 애당리	72-3	도	165	165	공	경상북도				
7	봉화군 춘양면 애당리	73-6	전	51	51	김**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춘양로 ***				
8	봉화군 춘양면 애당리	73-2	도	99	99	국	국토교통부				
9	봉화군 춘양면 애당리	산46-2	도	198	198	국	국토교통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관계	
10	봉화군 춘양면 애당리	산46-5	임	184	184	권*	서울용산구 한남동 ***-***				
11	봉화군 춘양면 애당리	산46-4	도	171	171	공	경상북도				
12	봉화군 춘양면 애당리	78-3	도	190	190	공	경상북도				
13	봉화군 춘양면 애당리	78-5	전	152	152	김**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				
14	봉화군 춘양면 애당리	78-2	도	499	499	국	국토교통부				
15	봉화군 춘양면 애당리	산48-5	도	61	61	공	경상북도				
16	봉화군 춘양면 애당리	산48-2	도	298	197	국	국토교통부				
17	봉화군 춘양면 애당리	106-3	도	285	239	공	경상북도				
18	봉화군 춘양면 애당리	106-1	도	678	59	국	국토교통부				
19	봉화군 춘양면 애당리	106-2	전	416	416	우**	대구 남구 대명동 ***-***. ***호				
20	봉화군 춘양면 애당리	산48-3	도	1,388	308	국	국토교통부				
21	봉화군 춘양면 애당리	산48-4	임	1,388	1,388	권** 외 2인	서울 성동구 응봉동 ** 현대아파트 ***-***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관계	
22	봉화군 춘양면 애당리	산197	도	-	1,594	국	국토교통부				
23	봉화군 춘양면 애당리	87-2	도	374	374	국	국토교통부				
24	봉화군 춘양면 애당리	산48-6	도	1,960	15	공	경상북도				
25	봉화군 춘양면 애당리	88-1	도	253	253	공	경상북도				
26	봉화군 춘양면 애당리	950	도	489	39	국	국토교통부				
27	봉화군 춘양면 애당리	86-1	도	202	192	국	국토교통부				
28	봉화군 춘양면 애당리	85-1	도	798	798	공	경상북도				
29	봉화군 춘양면 애당리	85-3	전	59	59	김** 외 4인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동부대로 **				
30	봉화군 춘양면 애당리	85-2	전	267	267	김** 외 4인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동부대로 **				
31	봉화군 춘양면 애당리	854	구	6,294	1,055	국	농림축산식 품부				
32	봉화군 춘양면 애당리	69-9	전	380	380	장**	강원도 태백시 황지로 *** (황지동)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관계	
33	봉화군 춘양면 애당리	69-10	전	12	12	장**	강원도 태백시 황지로 *** (황지동)				
34	봉화군 춘양면 애당리	67-4	도	3,682	3,346	국	국토교통부				
35	봉화군 춘양면 애당리	69-8	전	65	65	장**	강원도 태백시 황지로 *** (황지동)				
36	봉화군 춘양면 애당리	69-5	도	14	14	공	경상북도				
37	봉화군 춘양면 애당리	67-10	전	27	27	춘양* ***법 인주식 회사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의양로*길 **				
38	봉화군 춘양면 애당리	71-7	전	700	700	안**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춘양로 ****				
39	봉화군 춘양면 애당리	71-5	전	74	74	안**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춘양로 ****				
40	봉화군 춘양면 애당리	70-3	전	944	944	곽** 외 1인	대전 동구 대동 ***				
41	봉화군 춘양면 애당리	111-1	전	88	88	김**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새터길 **	춘양*** *조합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의양로 **	근 저당권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관계	
42	봉화군 춘양면 애당리	72-4	전	1,286	1,286	안**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춘양로 ****-**				
43	봉화군 춘양면 애당리	108-2	도	239	239	공	봉화군				
44	봉화군 춘양면 애당리	108-4	전	175	175	김**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춘양로 ***				
45	봉화군 춘양면 애당리	107-6	도	219	219	공	봉화군				
46	봉화군 춘양면 애당리	107-9	전	31	31	우**	대구광역시 달서구 본리동 ***- 성당레미안 이-편한세상 ****-*****				
47	봉화군 춘양면 애당리	107-8	전	115	115	우**	대구광역시 달서구 본리동 ***- 성당레미안 이-편한세상 ****-*****				
48	봉화군 춘양면 애당리	105-1	도	343	223	국	국토교통부				
49	봉화군 춘양면 애당리	105-7	도	497	495	공	경상북도				
50	봉화군 춘양면 애당리	105-9	전	2,086	2,086	우**	대구 남구 대명동 ****-**. ***호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관계	
51	봉화군 춘양면 애당리	105-10	전	1,643	1,643	김**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춘양로 ***, 가(에이)동 ***호 (변영빌라)				
52	봉화군 춘양면 애당리	105-12	전	70	70	김**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새터길 **-**				
53	봉화군 춘양면 애당리	105-11	전	1,275	1,275	김**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춘양로 ***, 가(에이)동 ***호 (변영빌라)				
54	봉화군 춘양면 애당리	101-2	전	138	138	김**	영주시 휴천동 ***-**				
55	봉화군 춘양면 애당리	105-6	전	579	579	김**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새터길 **-**				
56	봉화군 춘양면 애당리	105-14	전	144	144	김**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새터길 **-**				
57	봉화군 춘양면 애당리	105-15	전	98	98	김**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새터길 **-**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58	봉화군 춘양면 애당리	855	도	764	291	국	국토교통부				
59	봉화군 춘양면 애당리	87-3	전	3,092	3,092	김**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춘양로 ***, 가(에이)동 ***호 (변영빌라)				
60	봉화군 춘양면 애당리	88-4	임	658	658	김**	영주시 휴천동 ***-***				
61	봉화군 춘양면 애당리	88-3	임	430	430	김**	영주시 휴천동 ***-***				
62	봉화군 춘양면 애당리	89-2	과	6	6	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 *동***호 (여의도동, 목화아파트)				
63	봉화군 춘양면 애당리	86-4	과	1,575	1,575	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 *동***호 (여의도동, 목화아파트)				
64	봉화군 춘양면 석현리	837	구	6,126	969	국	농림축산 식품부				
65	봉화군 춘양면 석현리	722	도	524	434	공	경상북도				
66	봉화군 춘양면 석현리	0-8	가	-	348	미등기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관계	
67	봉화군 춘양면 석현리	721-3	도	35	1	공	경상북도				
68	봉화군 춘양면 석현리	720-2	도	1,656	673	국	국토교통부				
69	봉화군 춘양면 석현리	708-4	도	20	20	안**	대구시 북구 산격동 *****				
70	봉화군 춘양면 석현리	716-3	도	253	240	공	경상북도				
71	봉화군 춘양면 석현리	716-1	도	112	112	국	국토교통부				
72	봉화군 춘양면 석현리	717-2	도	390	31	국	국토교통부				
73	봉화군 춘양면 석현리	717-3	도	222	1	공	경상북도				
74	봉화군 춘양면 석현리	0-9	가	-	217	미등기					
75	봉화군 춘양면 석현리	산149- 3	도	293	52	공	경상북도				
76	봉화군 춘양면 석현리	산158- 1	도	36	36	공	경상북도				
77	봉화군 춘양면 석현리	715-6	전	201	201	박**	봉화군 춘양면 석현리 ***				
78	봉화군 춘양면 석현리	715-2	도	754	754	박**	봉화군 춘양면 석현리 ***				
79	봉화군 춘양면 석현리	636-2	전	84	84	김** 외 1인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공세동길 ***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관계	
80	봉화군 춘양면 석현리	637-9	전	208	208	안**	봉화군 춘양면 석현리 ***				
81	봉화군 춘양면 석현리	833	도	2,426	653	국	국토교통부				
82	봉화군 춘양면 석현리	641-6	전	85	85	김**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구지서로** 길 **				
83	봉화군 춘양면 석현리	641-1	전	2,235	2	김**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구지서로** 길 **				
84	봉화군 춘양면 석현리	641-4	도	197	197	공	경상북도				
85	봉화군 춘양면 석현리	642-6	전	71	71	남**	봉화군 춘양면 의양리 ***				
86	봉화군 춘양면 석현리	708-6	전	2,513	2,513	안**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공세동길 **-**	춘양*** *조합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의양로 **	근저당 권	
87	봉화군 춘양면 석현리	838	구	3,395	183	국	농림축산 식품부				
88	봉화군 춘양면 석현리	716-4	전	993	993	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 코오롱 아파트 ***-***				
89	봉화군 춘양면 석현리	711-1	도	26	26	국	국토교통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관계	
90	봉화군 춘양면 석현리	711-4	답	647	647	이**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로 **, ***동 ****호 (울곡동, 한신더휴 퍼스트리움)				
91	봉화군 춘양면 석현리	711-3	도	25	25	공	경상북도				
92	봉화군 춘양면 석현리	715-5	도	97	97	공	경상북도				
93	봉화군 춘양면 석현리	712-1	전	13	13	박**	봉화군 춘양면 석현리 ***				
94	봉화군 춘양면 석현리	715-3	전	158	138	박**	봉화군 춘양면 석현리 ***				
95	봉화군 춘양면 석현리	714-2	도	228	109	국	국토교통부				
96	봉화군 춘양면 석현리	636-1	도	2,578	2,258	공	경상북도				
97	봉화군 춘양면 석현리	637-2	도	202	85	국	국토교통부				
98	봉화군 춘양면 석현리	640-1	도	116	80	국	국토교통부				
99	봉화군 춘양면 석현리	641-7	전	40	40	최**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공세동길 **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관계	
100	봉화군 춘양면 석현리	642-7	전	91	91	김**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의양로 ***-	봉화군* **금고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봉화로 ****	근저당 권	
101	봉화군 춘양면 석현리	641-2	도	2,524	1,057	국	국토교통부				
102	봉화군 춘양면 석현리	640-3	도	2,026	352	공	경상북도				
103	봉화군 춘양면 석현리	643-4	답	85	85	김**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의양로 ***-	봉화군* **금고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봉화로 ****	근저당 권, 지상권	
104	봉화군 춘양면 석현리	643-2	답	1,466	6	김**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의양로 ***-	봉화군* **금고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봉화로 ****	근저당 권, 지상권	

경상북도 고시 제2025-432호

수동지구(준설)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시행계획승인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9조 규정에 따라 수동지구(준설)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10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사 업 목 적 : 저수지 준설로 저수량 증대, 수질개선 등을 통해 재해예방, 물 손실 최소화 및 영농편의기반 구축으로 영농편의에 따른 민원해소 및 식량증산에 기여하고자 함.

2. 사 업 내 용

지구명	위 치			수혜 면적 (ha)	사업개요	사업비 (백만원)	사업예정기간	비고
	시군	읍면	리동					
수동	영덕	창수	수	120.6	준설 11천m ³	300	2025.11 ~ 2025.12.31.	

3. 사업 효과 : 재해예방 및 농업인 영농편의 제공

4.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영덕·울진지사장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지장물의 세목조서 : 붙임 참조

6. 기 타 : 관계 설계도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영덕울진지사(☎054-730-5067)

에서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당초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관리의 종류및 내용	
	총계	4필지		10,303.9	10,303.9						
1	영덕군 창수면 삼계리	410	답	4,212.0	4,212.0	권정달	경북 영덕군 창수면 숲골2길 27	-	-	-	1사토장
2	영덕군 창수면 수리	645	답	805.6	805.6	이명일	경북 영덕군 창수면 숲골길 189-12	북영덕농업 협동조합	경북 영덕군 병곡면 병곡길71 (창수지점)	근저당	2사토장
3	영덕군 창수면 수리	646	답	2,656.4	2,656.4	이명진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로136-20, 1동 1308호 (모라동, 학산그린타운)	-	-	-	2사토장
4	영덕군 창수면 삼계리	910	답	2,629.9	2,629.9	권정달	경북 영덕군 창수면 숲골2길 27	-	-	-	3사토장

경상북도 고시 제2025-434호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10일

경 상 북 도 지 사

대상 시설물			지정 사유	안전점검·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용암1교	경북 성주군 용암면 상언리 908-1	경상북도 남부건설사업소(시설과)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에 설치된 연장 20미터 이상 100미터 미만인 도로교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2월 15일까지 시설물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3종시설물은 지정된 다음 연도부터 시설물유지관리계획 제출 및 지정된 다음 반기부터 정기안전점검 제출 대상임 -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함 	

대상 시설물			지정 사유	안전점검·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용암육교	경북 성주군 용암면 용정리 311-5	경상북도 남부건설사업소(시설과)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에 설치된 연장 20미터 이상 100미터 미만인 도로교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2월 15일까지 시설물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3종시설물은 지정된 다음 연도부터 시설물유지관리계획 제출 및 지정된 다음 반기부터 정기안전점검 제출 대상임 -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함 	
문명육교	경북 성주군 용암면 문명리 268-2	경상북도 남부건설사업소(시설과)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에 설치된 연장 20미터 이상 100미터 미만인 도로교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2월 15일까지 시설물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3종시설물은 지정된 다음 연도부터 시설물유지관리계획 제출 및 지정된 다음 반기부터 정기안전점검 제출 대상임 -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함 	

대상 시설물			지정 사유	안전점검·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신덕교 (하행)	경북 영천시 신녕면 신덕리 749-32	경상북도 남부건설사업 소(시설과)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에 설치된 연장 20미터 이상 100미터 미만인 도로교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2월 15일까지 시설물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3종시설물은 지정된 다음 연도부터 시설물유지관리계획 제출 및 지정된 다음 반기부터 정기안전점검 제출 대상임 -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함 	
사동교	경북 영천시 임고면 사리 1271-4	경상북도 남부건설사업 소(시설과)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에 설치된 연장 20미터 이상 100미터 미만인 도로교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2월 15일까지 시설물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3종시설물은 지정된 다음 연도부터 시설물유지관리계획 제출 및 지정된 다음 반기부터 정기안전점검 제출 대상임 -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함 	

대상 시설물			지정 사유	안전점검·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사동2교	경북 영천시 임고면 사리 1245-30	경상북도 남부건설사업 소(시설과)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에 설치된 연장 20미터 이상 100미터 미만인 도로교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2월 15일까지 시설물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3 종시설물은 지정된 다음 연도부터 시설 물유지관리계획 제출 및 지정된 다음 반기 부터 정기안전점검 제출 대상임 - 제3종 시설물 지정·고 시일로부터 30일 이 내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를 제출하여 야 함 	
안지교	경북 포항시 북구 신광면 만석리 824-3	경상북도 남부건설사업 소(시설과)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에 설치된 연장 20미터 이상 100미터 미만인 도로교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2월 15일까지 시설물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3 종시설물은 지정된 다음 연도부터 시설 물유지관리계획 제출 및 지정된 다음 반기 부터 정기안전점검 제출 대상임 - 제3종 시설물 지정·고 시일로부터 30일 이 내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를 제출하여 야 함 	

경상북도 고시 제2025-435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신규,변경) 고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등록)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등록절차)에 따라 경상북도에 신규 및 변경 등록 된 비영리민간단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10일

경 상 북 도 지 사

연번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명성	등 록 연월일	주된 사업	주관과	등록구분 (신규·변경)
1	김유신 문화사업회	경상북도 경산시 자인면 설충로 883, 2층	유운선	2025.09.11.	가. 김유신장군의 행적 및 압록주(압량주) 관련유적 · 역사자원발굴및홍보 나. 압록국의 역사문화 콘텐츠발굴 및 지역정체성 확립을 위한 홍보사업 다. 역사문화 관련 학술회의, 세미나, 교육연수 등의 연구 및 교육사업 라. 역사문화 콘텐츠 관련 도서출판, 영상물제작 등 문화홍보사업 마. 역사문화자원 관련 답사·탐방 및 관광자원화 사업의 추진 바. 장학사업 및 지역 사회소외계층을 위한 복지·나눔 사업 사. 기타본단체의목적달성에필요한사업	새마을 봉사과	신규
2	(사)안동지원 봉사센터	경상북도 안동시 안기천로 74	손호영	2001.09.15.	가. 재가복지활동 나. 자원봉사자교육사업 다. 자원봉사자발굴사업	새마을 봉사과	대표자변경
3	꿈틀-꿈꾸는 이들을 위한 플랫폼	경상북도 김천시 영남대로 2159, 2층	김선주	2023.02.20.	가.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진로탐색을 위한 활동 나. 지역사회 청소년, 학부모의 역량강화를 위한 활동 다. 지역사회 환경정화 및 생태보존을 위한 활동 라. 기타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활동	새마을 봉사과	명칭 변경
4	죽도시장 번영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칠성천길 122	이미나	2022.03.21.	가. 재난구조활동지원사업 나. 지역환경 보존지원활동 다. 지역사회 대민지원사업(청소, 방역소독등) 라. 기타 단체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새마을 봉사과	대표자변경

연번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 록 연월일	주된 사업	주관과	등록구분 (신규·변경)
5	(사)한국교통 장애인협회 경주시지회	경상북도 경주시 유림로 5번길 99-17, 1층 4호	이광식	2004.07.16.	가. 장애인복지사업 연구 및 교육훈련 나. 교통안전캠페인 다. 장애인정보통신교육(장애인무료컴퓨터교육)	새마을 봉사과	소제지변경 목적사업 변경
6	상주시 반려동물 문화협회	경상북도 상주시 신서문2길 56	백승복	2025.10.21.	가. 반려동물을 위한 정책 제안 나. 동물학대방지를 위한 캠페인 다. 반려동물 문화컨텐츠 및 행사주최 라. 기타 본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새마을 봉사과	신규
7	울릉도 나물음식문화 전승보전 협의회	경상북도 울릉군 북면 현포2길 121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내지역협력실)	김윤배	2025.10.24.	가. 울릉도 나물음식문화의 보전 연구 나. 울릉도 나물음식문화의 교육 및 홍보 다. 울릉도 나물음식문화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활동 라. 울릉도 나물음식문화의 가치 확산을 위한 교류 활동 마. 울릉도 나물음식문화를 통한 부속섬 독도 영토 보전 활동 바.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	새마을 봉사과	신규
8	CUBE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초곡지구로 55, 3층 301호	김준호	2025.10.24.	가. 학생자치기구 활성화 지원 나.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지역 대학생 간담회 다. 청년 및 대학 문화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라. 청년 및 대학 네트워킹 형성 마. 기타 본 회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	새마을 봉사과	신규



경 상 북 도

공 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5-2171호

도로공사 시행허가 내용 공고

「도로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의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공사 시행에 대한 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0일

경 상 북 도 지 사

도로의 종류	지방도(제913호)	노 선 명	수륜~낙동
공사의 종류	대가 옥성회전교차로 설치공사		
공 사 구 간	성주군 대가면 옥성리 752 일원		
시 행 장 소	상 동		
목적 및 사유	옥성교차로(비신호,비정형)의 교통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회전교차로로 전환하여 안전한 도로이용 환경 조성		
착수예정일	2025년 12월	준공예정일	2026년 12월 31일

경상북도 공고 제2025-2181호

사방사업 토지사용통지 공시송달 공고

「사방사업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에게 사방사업 토지사용통지서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주소불분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0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제 목 : 사방사업 토지사용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
3. 공시송달 내역 : 붙임내역서 참조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원서부지원(☎054-420-87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2025년사방사업토지사용통지공시송달내역

연번	시군	읍면	리동	지 적 공 부			사방사업실행		토 지 사 용 내 역		소 유 자		비고
				지번	지목	지적 (㎡)	사업명	면적 (㎡)	사 용 기 간	사 용 자 재	주 소	성 명	
1	칠곡	동명	기성	산17-2	임야	34,116	사방사업	172	2025.11. ~ 2026. 2.	토, 잔디 등	대구시 동구 신천동 507-3	최태룡	2025년도 사방댐설치사업 (칠곡동명기성)

경상북도 공고 제2025-2183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처분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0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공고기간 : 2025. 11. 10. ~ 2025. 11. 24.(15일간)

2. 처분대상 및 처분내용

업체명 (대표자)	건설업종 (등록번호)	소재지	행정처분	위반내역	근거법령
주식회사 제이에스 종합건설 (한은주)	건축공사업 (16-0737)	경상북도 경산시 압량읍 압독2로1길 24, 2층	과태료 (금2,000,000원)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1,2층 대수선 및 용도변경공사	「건설산업 기본법」 제99조 제3호

3. 안내사항

가. 경북도청 도시계획과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받아 기한 내에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나.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시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다.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징수되고, 그 후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증가산금이 부과(최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함)되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경상북도 도시계획과(☎054-880-391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공고 제2025-2184호

전력시설물의 설계업, 감리업 등록 공고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전력시설물의 설계업, 감리업을 등록한 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0일

경 상 북 도 지 사

- 전력시설물의 설계업, 감리업 등록내용 -

업종 및 등록번호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전문설계업(2종) 경북 제2025- 6470000-85-13 -00006호	케이티지 (867-46-00527)	양은희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천년숲서로 43-14, 5층
전문감리업 경북 제2025- 6470000-86-22 -00010호			

※ 등록일자 : 2025년 11월 7일. 끝.

경상북도 공고 제2025-2190호

경상북도 행정규제 혁신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행정규제 혁신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0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제정이유

- 현행 「경상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규제심의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한정되어 있어, 도 차원의 규제혁신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존재
- 「행정규제기본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규제의 등록·심사·정비·재검토 등 규제관리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며, 도민 의견 수렴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경상북도 행정규제 혁신 조례」를 새롭게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규제 등록 및 공표 : 규제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강화하는 경우 규제사무를 행정규제개혁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도민에게 공개 (안 제3조~제4조)
- 나. 규제심사 절차 강화 :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경우 소관부서의 자체 심사 및 자치규제 영향분석서 작성 의무화, 중요규제의 경우 경상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의무화(안 제6조~제8조)
- 다. 규제의 재검토 제도화 :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도래 시 규제영향분석을 통해 폐지·완화 등 조치(안 제9조)
- 라. 규제정비 종합계획 수립 : 도지사가 매년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추진실적을 도의회에 보고(안 제10조)
- 마. 의견수렴 제도화 : 누구든지 규제 정비 의견 제출 가능, 규제신고센터 및 기업규제현장지원단 운영(안 제11조, 제19조~제20조)
- 바. 규제개혁위원회 기능 확대 : 중요규제 심사, 규제정비 의견 반영 등 기능 강화, 위원 위촉 규정 정비(안 제12조~제18조)
- 사. 공무원 책임보호 및 포상 : 규제개선을 위한 공무원의 행위에 불이익 금지, 규제개선 유공 공무원 포상 근거 마련(안 제21조)
- 아. 경과조치 및 폐지조항 : 「경상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및 기존 위원회 승계 규정(부칙)

3. 제정안: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3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담당부서: 경제혁신추진단)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이메일, 방문 등

라. 보내실 곳

주소: 우)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북도청 경북시대 2층 경제혁신추진단

전화: 054-880-3473, Fax: 054-880-3489,

이메일: hsyys21@korea.kr

- 붙임 1. 제정 조례안 1부.
2. [별지 서식] 자치규제 영향분석서 1부.
3. 관계법령 발췌 1부. 끝.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행정규제 혁신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사항과 그 밖에 경상북도의 규제개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란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다.
2. “중요규제”란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기업활동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규제로서, 그 판단기준은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른다.
3. “조례등”이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조례·규칙을 말한다.
4. “입법안”이란 조례등의 제정·개정·폐지안을 말한다.

제3조(규제의 등록)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조례등에 규제를 신설 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강화하는 경우에는 규제의 명칭·내용·근거·담당부서 등의 내용을 담은 규제사무를 해당 조례등이 공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규제개혁 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4조(규제사무목록의 공표)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등록한 규제사무를 도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도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2장 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한 심사

제5조(규제의 사전검토) ① 도 실·국·본부장 및 직속 기관장(이하 “소관부서장”이라 한다)은 입법안을 기안할 때 해당 안에 규제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규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하 “주관부서장”이라 한다)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장은 소관부서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의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소관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자치규제 영향분석서 및 자체심사) ① 소관부서장은 주관부서장으로부터 입법안에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가 포함되어 있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하고 별지 서식에 따라 자치규제 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장은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입법예고를 할 때 자치규제 영향분석서를 함께 공개하여야 한다.

③ 입법예고 후 제출된 의견은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자치규제 영향분석서에 반영하고, 의견을 제출한 사람에게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 건의나 처리 결과의 통지가 불필요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소관부서장은 규제영향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규제의 타당성에 대하여 자체 심사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규제심사) ① 소관부서장은 조례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규제의 신설 및 강화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주관부서장에게 규제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자치규제 영향분석서

2. 자체심사 의견

3. 도민·이해관계인 등의 제출의견 요지

② 주관부서장은 규제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관 부서에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장은 심사 결과 중요규제가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경상북도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사를 회부하여야 한다.

제8조(중요규제심사) ① 위원회는 중요규제에 대하여 심사를 회부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심사를 끝내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15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첨부서류 중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소관부서장에게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하는 데 걸린 기간은 제1항의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③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심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결과를 주관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주관부서장은 지체없이 그 결과를 소관부서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⑥ 소관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해당규제를 개선하도록 권고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결과 이의가 있거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규제의 재검토) ① 도지사는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에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는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키한을 설정하여 그 조례 등에 규정하여야 한다.

- ②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키한은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하며,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도지사는 규제의 재검토키한이 도래하는 경우 제6조에 따른 규제영향분석 등의 방법으로 규제의 재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지사에게 그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키한을 연장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3장 규제의 정비

제10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지역 실정에 맞는 규제의 정비를 위하여 매년 경상북도 규제정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규제정비의 기본방향
2.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 분야
3. 도민·기업·전문가 의견수렴 결과의 반영 방안
4. 그 밖에 도지사가 규제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의 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 및 평가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매년 당해연도 종합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 점검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 제출) ① 누구든지 규제의 정비에 관하여 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의견은 제19조에 따른 경상북도 규제신고센터 또는 제20조에 따른 기업규제현장지원단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에 보고하거나 종합계획 및 규제심사 과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의견 제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민, 기업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모하거나 각급 행정기관·공공단체·민간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12조(설치) 도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규제개혁위원회를 둔다.

제1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중요규제에 대한 심사
2. 규제의 신설·강화에 관한 심사결과 검토
3. 규제개선 실태의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4. 규제정비 의견의 처리 및 반영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규제개혁, 경제정책, 환경정책, 건설행정, 소방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규제개혁 또는 행정·정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법률·경제·산업·경영 등 관련 분야 전문가
3. 지역 내 기업·상공회의소·중소기업 단체 또는 산업별 협회에서 추천한 사람
4. 대학·연구기관 등 학계의 전문가
5. 경상북도의회 의원 중에서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6.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규제개혁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⑦ 이 외 위원회 구성에 관련한 사항은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5조(위원장과 부위원장) ① 위원장은 경제부지사로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토의 내용 및 의결 사항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록은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 보호나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안건을 소관 하는 부서의 공무원 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북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8조(운영)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장 규제신고 및 현장지원

제19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도민의 규제와 애로사항을 상시 적으로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규제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항은 관계 부서의 검토를 거쳐 처리하며,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자문이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제20조(현장지원단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장애가 되는 규제와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기업규제현장지원단

(이하 “현장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현장지원단의 세부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21조(공무원의 책임 등) ① 공무원이 규제개선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그 공무원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불리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② 도지사는 규제개선 업무추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경상북도 포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경상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경상북도 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경상북도 규제개혁위원회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경상북도 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경상북도 규제개혁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제14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제외한다.

[별지 서식]

자치규제 영향분석서

1-1. 규제사무명	조항 명 기입				
1-2. 규제유형 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설 <input type="checkbox"/> 강화 <input type="checkbox"/> 존속기한 연장 <input type="checkbox"/> 기타				
1-3. 소관부서 및 작성자 인적사항	자치단체명	○○○○	작성자	이름	○○○
	담당부서	○○○○○		직급	○○○
	국장	○○○		연락처	000-000-0000
	과장	○○○		이메일	____@____
1-4. 규제조문 (근거법규 및 분류)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개별법 위임규제 <input type="checkbox"/> 자치사무 규제 <input type="checkbox"/> 기타(특별법·특례 등)				
1-5. 규제의 내용	기존				
	변경				
1-6. 피규제자 및 이해관계자	피규제자				
	이해당사자				
1-7. 비용대비 편익 또는 효과 요약	※ 자치규제의 파급효과·중요도·주민체감도 등에 따라 정성적·정성적 비용·편익 또는 비용·효과분석을 협의하여 결정 후 수행				
1-8. 일몰설정 여부	일몰설정 여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존속기한 미설정 <input type="checkbox"/> 존속기한 설정			
	존속기한·사유	※ 설정 혹은 미설정 사유 및 관련 자치법규			

2-1. 자치규제의 신설·강화 등의 필요성

(1)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경제적 문제의 내용과 원인

(2) 문제해결을 위한 자치규제의 필요성

※ 공공부문이 개입할만큼 시급하고 중대한 지역사회 문제인지 반드시 검토

2-2. 자치규제의 목표·기대효과

(1) 자치규제의 미래의 비전과 정량적 목표·기대효과

(2) 기존규제로의 대체여부 및 현 신설·강화 등 이외의 대안 (※ 표준형의 경우만 작성)

2-3. 목적·수단간 비례적 타당성

※ 규제 신설·강화 등 변경하고자 하는 대안의 적절한 수단인지 여부, 또는 사회적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거나 사회적 비용대비 편익이 더 큰지, 또는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효과보다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큰지 등 자유롭게 기술

2-4. 자치규제의 지역경제로의 영향·파급효과 (※ 하기 각 내용 중 해당하는 경우만 작성)

(1) 경쟁제한 요소에 대한 검토

신설·강화되는 자치규제로 인해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의 제한,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사업자의 경쟁유인을 감소(협약가입 의무, 사업정보 공개 요구 등),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를 제한하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체크사유	※ “예”로 체크한 경우와 “예”에 해당하나 상기와 같은 불가피한 조치로 ”아니오”로 체크한 경우에만 관련 내용을 간략히 기술

(2) 기업활동으로의 영향 검토

신설·강화되는 자치규제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규제부담 경감 및 형평성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에게 규제를 차등화하여 적용하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체크 사유	※ “예”로 체크한 경우에만 관련 내용 간략히 기술

(3) 우선허용·사후규제 관련 사항

신설·강화되는 자치규제는 「행정규제기본법」 제5조의 2에 제시된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적용하여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을 채택하거나 또는 향후 이러한 방식으로의 전환을 지향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체크 사유	※ “예”로 체크한 경우에만 관련 내용 간략히 기술

2-5. 비용·편익(또는 효과) 분석·비교

(1) 피규제자 및 규제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타 이해당사자

- ※ 이해당사자별로 작성 필요, [규제당국] 자치규제의 집행·감시자인 지방자치단체, [피규제자] 권리 제한 또는 의무가 부여되는 이해당사자, [규제수혜자] 규제가 시행되는 경우 혜택이나 보호를 받는 이해당사자, [기타] 규제에 의해 긍·부정적 영향을 받는 이해당사자
- ※ 특히 피규제자 및 규제수혜자, 기타 이해당사자가 민간인 경우, 표준형과 간이형 모두에서 지역 내 이해당사자의 규모(예: 주민 ○○○인, 사업체 ○○○개소 등)를 구체적으로 기입하고, 통계자료 등 규모 추정치의 근거를 제시

(2) 피규제자 및 이해당사자로의 영향

- ※ 자치규제가 시행되는 경우, 이해당사자별 정성적으로 영향관계를 간략히 기술(단, 규제당국, 피규제자 및 규제수혜자는 반드시 작성, 이해당사자별 3줄 이내)

(3) 이해당사자별 비용(규제집행·감시비용 및 규제순응비용) ※ 표준형의 경우만 작성

	연간 비용	추정근거
규제당국 (집행·감시비용)		
피규제자 (규제순응비용)	○○○원/년	
기타 이해당사자	○○○원/년	※ 기타 이해당사자가 없을 경우 해당 칸 삭제, 복수일 경우 여러 칸으로 표를 분할하여 작성

※ 규제당국의 집행·감시비용은 자치단체가 신설·강화되는 자치규제를 집행·감시하는데에 추가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연간 비용을 의미하며, 피규제자의 규제순응비용은 자치규제로 인해 권리가 제한되거나 또는 의무를 부여받는 이해당사자가 해당 자치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비용을 의미. 마찬가지로 기타 이해당사자의 경우 규제에 의해 비용추가가 예상되는 집단을 의미함.

(4) 이해당사자별 편익 또는 효과

※ 표준형의 경우만 작성

	연간 편익 또는 효과	추정근거
규제수혜자	○○○원/년 또는 ○○○ 단위/년	
기타 이해당사자	○○○원/년 또는 ○○○ 단위/년	※ 기타 이해당사자가 없을 경우 해당 칸 삭제, 복수일 경우 여러 칸으로 표를 분할하여 작성

※ 규제수혜자의 편익은 자치규제가 시행되는 경우 받는 혜택에 대해 1년간의 기간을 대상으로 화폐 가치로 표현한 것을 의미하며, 기타 이해당사자의 편익은 직접적인 규제수혜자 외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이해당사자의 혜택에 대해 1년간의 기간을 대상으로 화폐가치로 표현한 것을 의미

※ 화폐가치로 표현된 편익을 산출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관련 가격이나 비용절감분 등 관련 시장 정보가 없는 경우), 혜택을 다른 단위로 표현하는 것을 효과라고 함

(5) 비용과 편익(또는 효과)의 비교

- ※ 정량분석의 경우 비용대비 편익(B/C) 또는 비용대비 효과(B/E), 정성분석의 경우 비용 또는 편익의 정성적인 비교 등 간략히 기술

2-6. 정책적 고려사항

(1) 자치규제 정비계획

자치규제의 신설·강화로 발생하는 피규제자 등 이해당사자 또는 주민 및 지역사회 구성원의 부담을 상쇄하기 위한 규제정비 추진사항 또는 계획은 고려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체크 사유	※ “예”로 체크한 경우에만 관련 내용 간략히 기술

(2) 현재 기술수준 및 피규제자의 규제순응도

신설·강화되는 자치규제에 대해 피규제자가 기술적 또는 사회경제적인 이유로 해당 규제를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체크 사유	※ “예”로 체크한 경우에만 관련 내용 간략히 기술

(3) 이해당사자 협의·의견수렴 과정 및 결과

신설·강화되는 자치규제에 대해 자치법규 제·개정 전 피규제자 및 규제수혜자, 이해당사자의 협의, 의견수렴 또는 공론화 절차를 수행하였나?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체크 사유	※ “예”로 체크한 경우에만 행사명, 날짜, 참석자 등 관련 내용 간략히 기술

피규제자 또는 규제수혜자, 기타 이해당사자가 신설·강화하는 규제에 대해 자치법규 제·개정 전 반대하거나 실익이 없다거나 또는 우려되는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체크 사유	※ “예”로 체크한 경우에만 관련 내용 간략히 기술

자치법규 제·개정 전 자치법규 제·개정 전 피규제자 또는 규제수혜자, 기타 이해당사자의 의견은 반영되었나? ※ 반대 또는 우려되는 의견이 없는 경우 “예”로 표기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체크 사유	※ “아니오”로 체크한 경우에만 관련 내용 간략히 기술

(4) 유사사례 검토결과

신설·강화되는 자치규제에 대해 국·내외 유사사례를 검토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체크 사유	※ “예”로 체크한 경우에만 관련 사례 및 검토내용 간략히 기술

(5) 자치규제 신설·강화시 행정적 영향요인 및 예상 애로사항

신설·강화되는 자치규제로 인해 피규제자 등 이해당사자에게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을 지우거나, 행정 절차 등을 간소화할 여지는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체크 사유	※ “아니오”로 체크한 경우에만 관련 사유를 간략히 기술

신설·강화되는 자치규제가 시행되는 경우, 소속된 자치단체의 집행·감시에 있어서 인력·예산 등 애로사항 또는 문제점이 예상되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체크 사유	※ “아니오”로 체크한 경우에만 관련 사유를 간략히 기술

(6) 규제대안의 대체가능성 및 존속기한의 타당성

신설·강화되는 자치규제가 상위 행정기관으로부터 위임된 자치규제의 경우, 상위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는가? ※ 위임규제가 아닌 경우 “아니오”로 체크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체크 사유	※ “아니오”로 체크한 경우에만 사유 및 관련 검토내용 간략히 기술
신설·강화되는 자치규제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수단(예: 자율규제, 강제조항보다 과태료·벌칙금 등 경제적 유인방식 등)은 없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체크 사유	※ “예”로 체크한 경우에만 관련 사유 간략히 기술
신설·강화되는 자치규제에 대해 해당 규제대안의 존속기한, 재검토 기한과 그 사유는 적절히 제시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체크 사유	※ “예”로 체크한 경우에만 관련 내용 간략히 기술

3-1. 분석결과 요약

구분	[정량적 분석의 경우] 연간 비용 또는 연간 편익·효과 [정성적 분석의 경우]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
규제당국 (지자체)	※ 정량적 분석의 경우 신설·강화되는 자치규제로 인해 추가되는 자치단체의 연간 집행·감시비용을, 정성적 분석의 경우 집행·감시에 있어서 변화가 예상되는 긍·부정적 사항을 간략히 기술
피규제자	※ 정량적 분석의 경우 피규제자가 추가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연간 규제순응비용을, 정성적 분석의 경우 피규제자의 규제순응시 변화가 예상되는 긍·부정적 사항을 간략히 기술
규제수혜자 등 이해당사자	※ 정량적 분석의 경우 규제수혜자의 연간 편익과 기타 이해당사자의 연간 비용 또는 편익을, 정성적 분석의 경우 규제수혜자 및 기타 이해당사자의 긍·부정적 변화를 간략히 기술

3-2. 기타 의견

※ 기타 신설·강화되는 규제의 심사 또는 시행에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내용에 대해 자유롭게 기술. 해당 사항이 없으면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함.

3-3. 별첨

※ 자치규제의 신설·강화가 시급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거나 또는 본 영향분석서의 작성항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별첨

관련법령발취

○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2(중요규제의 판단기준) ①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요규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제로 한다.

1. 규제의 시행에 따라 규제를 받는 집단과 국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 연간 100억원 이상인 규제
2. 규제를 받는 사람의 수가 연간 100만명 이상인 규제
3. 명백하게 진입이나 경쟁이 제한적인 성격의 규제
4. 국제기준에 비추어 규제 정도가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
5. 다른 행정기관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거나 시행 예정인 규제와 심각한 불일치 또는 간섭을 발생시키는 규제
6. 이해관계인 간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거나 사회·경제적으로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규제
7. 중소기업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기술영향평가의 결과 개선이 필요한 규제
8.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규제

경상북도 공고 제2025-2191호

공정한 경쟁 유도를 위한 2개 경상북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공정한 경쟁 유도를 위한 2개 경상북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0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제정이유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자치법규 중 경쟁제한적인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경쟁을 제한하는 문구를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문구로 변경

3. 제정안: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3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담당부서: 경제혁신추진단)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이메일, 방문 등

라. 보내실 곳

주소: 우)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북도청 경북시대 2층 경제혁신추진단

전화: 054-880-3473, Fax: 054-880-3489,

이메일: hsyys21@korea.kr

- 붙임 1. 제정 조례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관계법령 발췌 1부. 끝.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공정한 경쟁 유도를 위한 2개 경상북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경상북도 조례 중 경쟁제한적인 문구를 일괄개정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상북도 LED조명 보급 촉진 조례」의 개정) 경상북도 LED조명 보급 촉진 조례 제8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지역생산제품 활성화) 도지사는 LED조명 교체 사업을 추진할 때, 지역에서 생산된 LED 제품의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3조(「경상북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상북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조례 제6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지역목재) 도지사는 목재나 목재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지역목재나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구매를 장려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LED조명 보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지역생산제품의 구매) 도지사는 LED조명 교체 시 지역생산 LED 제품을 우선 사용토록 권장한다.	제8조(지역생산제품 활성화) 도지사는 LED조명 교체 사업을 추진할 때, 지역에서 생산된 LED 제품의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경상북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우선구매) 도지사는 목재나 목재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지역목재나 지역간벌재 이용제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지역목재) 도지사는 목재나 목재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지역목재나 지역간벌재 이용제품의 구매를 장려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관련법령발취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부당하게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시 군

고 시

영주시 고시 제2025-159호

도시계획시설(영주댐 하류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영주시 평은면 용혈리 1037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영주댐 하류공원)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10일

영 주 시



1.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총괄)

1)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증감	변경후		
변경	담1	영주담 하류공원	문화공원	평은면 용혈리 1037 일원	99,737	감)3,318	96,419	부산청고시 제2017-294호 (2017. 6. 14.)	

나.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담1	영주담 하류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 3,318㎡ A=99,737㎡ → 96,4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원조성계획 현행화 및 여건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공원조성계획 재정비

2.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가.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조서 (총괄)

구 분	면 적 (㎡)				건축바닥면적(㎡)			비고	
	기정	증감	변경	구성비 (%)	기정	증감	변경		
총 계	99,737	감)3,318	96,419	100.0	2,223	감)1,058	1,165		
공원 시설	소 계	65,665	증)8,645	74,310	77.1	2,223	감)1,058	1,165	
	도로 및 광장	21,093	감)5,459	15,634	16.2	-	-	-	
	조 경 시 설	8,655	감)3,163	5,492	5.7	-	-	-	
	휴 양 시 설	18,960	증)14,552	33,512	34.8	-	증)492	492	
	운 동 시 설	2,755	증)5,891	8,646	9.0	-	-	-	
	편 익 시 설	3,720	감)491	3,229	3.3	288	증)110	398	
	관 리 시 설	10,482	감)2,685	7,797	8.1	1,935	감)1,660	275	
녹 지	34,072	감)11,963	22,109	22.9	-	-	-		

나. 세부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번호	시 설 명	위 치	부지면적 (㎡)	건축규모(㎡)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기 정				99,737	2,223	2,223	
변 경				96,419	1,165	1,165	
1. 도로 및 광장							
기 정		소계		21,093	-	-	

구분	도면번호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m ²)	건축규모(m ²)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변경		소계		15,634	-	-	
기정	-	도로	전 지역	20,823	-	-	
변경	-	도로	전 지역	15,431	-	-	
기정	1-1	진입광장	용혈리 992번지 일원	270	-	-	
변경	1-1	진입광장	용혈리 992번지 일원	203	-	-	
2. 조경시설							
기정		소계		8,655	-	-	
변경		소계		5,492	-	-	
기정	2-1	피크닉장	용혈리 1008-1번지 일원	4,370	-	-	
폐지	2-1	피크닉장	용혈리 1008-1번지 일원	4,370	-	-	
기정	2-2	피크닉장	용혈리 1008-9번지 일원	2,485	-	-	
변경	2-1	피크닉장	용혈리 1008-9번지 일원	2,250	-	-	도면번호 면적감소
기정	2-3	야외무대	용혈리 1007-2번지 일원	1,800	-	-	
변경	2-2	야외무대	용혈리 1031번지 일원	1,027	-	-	도면번호 면적감소
변경	2-3	전통정자	용혈리 1031번지 일원	687	-	-	도면번호 명칭변경
신설	2-4	초화정원	용혈리 1042번지 일원	1,528	-	-	
3. 휴양시설							
기정		소계		18,960	-	-	

구분	도면 번호	시 설 명	위 치	부지면적 (㎡)	건축규모(㎡)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변 경		소 계		33,512	492	492	
기정	3-1	오토캠핑장	용혈리 1076번지 일원	10,640	-	-	
변경	3-1	오토캠핑장	용혈리 1076번지 일원	10,458	-	-	
기정	3-2	오토캠핑장	용혈리 1063-4번지 일원	1,535	-	-	
변경	3-2	오토캠핑장	용혈리 1063-4번지 일원	1,944	92	92	
기정	3-3	오토캠핑장	용혈리 1049번지 일원	2,415	-	-	
변경	3-3	오토캠핑장	용혈리 1049번지 일원	2,827	250	250	
기정	3-4	오토캠핑장	용혈리 1056번지 일원	2,190	-	-	
변경	3-4	오토캠핑장	용혈리 1056번지 일원	2,262	150	150	
기정	3-5	오토캠핑장	용혈리 1057번지 일원	2,180	-	-	
변경	3-5	오토캠핑장	용혈리 1057번지 일원	2,423	-	-	
신설	3-6	오토캠핑장	용혈리 1008-1번지 일원	9,416	-	-	
신설	3-7	오토캠핑장	용혈리 1007-2번지 일원	1,188	-	-	
신설	3-8	오토캠핑장	용혈리 1070-3번지 일원	2,994	-	-	
4. 운동시설							
기 정		소 계		2,755	-	-	
변 경		소 계		8,606	-	-	

구분	도면 번호	시 설 명	위 치	부지면적 (㎡)	건축규모(㎡)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4-1	축구장	용혈리 1037번지 일원	2,755	-	-	
변경	4-1	축구장	용혈리 1037번지 일원	2,005	-	-	
신설	4-2	농구장	용혈리 1034-2번지 일원	5,216	-	-	
신설	4-3	체력단련장	용혈리 1008-3번지 일원	530	-	-	
신설	4-4	체력단련장	용혈리 1070-1번지 일원	855	-	-	
5. 편의시설							
기 정			소계	3,720	288	288	
변 경			소계	3,229	398	398	
기정	5-1	주차장	용혈리 1007-1번지 일원	2,190	-	-	
변경	5-1	주차장	용혈리 1007-1번지 일원	2,025	-	-	
기정	5-2	화장실	용혈리 1008-10번지 일원	555	110	110	
변경	5-2	공동취사장	용혈리 1008-10번지 일원	238	100	100	
기정	5-3	공동취사장	용혈리 1057번지 일원	225	-	-	
변경	5-3	화장실	용혈리 1057번지 일원	216	20	20	
기정	5-4	공동취사장	용혈리 1074번지 일원	370	-	-	
변경	5-4	공동취사장	용혈리 1074번지 일원	370	100	100	
기정	5-5	공중화장실	용혈리 1070-2번지 일원	380	178	178	

구분	도면번호	시 설 명	위 치	부지면적 (㎡)	건축규모(㎡)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변경	5-5	공용화장실	용혈리 1070-2번지 일원	380	178	178	명칭변경
6. 관리시설							
기 정			소 계	10,482	1,935	1,935	
변 경			소 계	7,797	275	275	
기정	6-1	관리동	용혈리 1034-1번지 일원	8,512	1,700	1,700	
변경	6-1	관리동	용혈리 1034-1번지 일원	6,216	275	275	
폐지	6-2	관리동	용혈리 1020번지 일원	1,970	235	235	
신설	6-2	분리수거장	용혈리 1070-1번지 일원	215	-	-	
신설	6-3	오수처리장	용혈리 1008-14번지 일원	246	-	-	
신설	6-4	오수처리장	용혈리 1046번지 일원	1,120	-	-	
7. 기 타							
기정			소 계	34,072			
변경			소 계	22,109			
기정	-	녹 지	공 원 전 역	34,072	-	-	
변경	-	녹 지	공 원 전 역	22,109	-	-	

다. 세부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등급	유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 점	종 점	비고
기 정				2~13	2,978	20,823			
변 경				2~13	2,674	15,431			
기정	중로	3	1	13	353	4,589	용혈리 992번지	용혈리 1263-13번지	
변경	중로	3	1	13	328	4,264	용혈리 992번지	용혈리 1019-1번지	
기정	소로	1	1	11	992	10,912	용혈리 1266-5번지	용혈리 1008-9번지	
변경	소로	1	1	10	264	2,640	용혈리 1019-1번지	용혈리 1019-1번지	
폐지	소로	2	1	8	162	1,296	용혈리 1021번지	용혈리 1040번지	
기정	소로	3	1	6	7	42	용혈리 1008-1번지	용혈리 1008-1번지	
기정	소로	3	2	4	67	268	용혈리 1051번지	용혈리 1057번지	
변경	소로	3	2	6	51	306	용혈리 1040번지	용혈리 1041번지	
기정	소로	3	3	4	101	409	용혈리 1070-1번지	용혈리 1070-3번지	
변경	소로	3	3	6	255	1,530	용혈리 1046번지	용혈리 1070-1번지	
기정	소로	3	4	3	274	822	용혈리 1011번지	용혈리 1023-2번지	
변경	소로	3	4	6	530	3,180	용혈리 1268번지	용혈리 1017-1번지	
기정	소로	3	5	3	227	831	용혈리 1008-4번지	용혈리 1007-2번지	
변경	소로	3	5	4	171	684	용혈리 1070-1번지	용혈리 1068번지	
기정	소로	3	6	3	64	192	용혈리 1007-2번지	용혈리 1265-2번지	
변경	소로	3	6	4	22	88	용혈리 1051번지	용혈리 1263-22번지	
기정	소로	3	7	2	296	592	용혈리 1263-1번지	용혈리 1062번지	
변경	소로	3	7	4	20	80	용혈리 1057-6번지	용혈리 1057-6번지	
기정	소로	3	8	2	239	478	용혈리 1046번지	용혈리 1263-1번지	
변경	소로	3	8	3	284	852	용혈리 1011번지	용혈리 1023-2번지	
기정	소로	3	9	2	15	30	용혈리 1070-1번지	용혈리 1070-1번지	
변경	소로	3	9	3	227	681	용혈리 1008-4번지	용혈리 1007-2번지	
기정	소로	3	10	2	85	170	용혈리 1070-3번지	용혈리 1070-1번지	
변경	소로	3	10	3	64	192	용혈리 1007-2번지	용혈리 1265-2번지	
기정	소로	3	11	2	96	192	용혈리 1061번지	용혈리 1263-1번지	
변경	소로	3	11	2	66	132	용혈리 1266-5번지	용혈리 1031번지	
신설	소로	3	12	2	218	436	용혈리 1263-6번지	용혈리 1070-1번지	
신설	소로	3	13	2	17	24	용혈리 1070-1번지	용혈리 1070-1번지	
신설	소로	3	14	2	85	170	용혈리 1070-3번지	용혈리 1070-1번지	
신설	소로	3	15	2	65	130	용혈리 1061번지	용혈리 1236-19번지	

라. 세부시설 변경 및 사유서

구 분	도면 번호	시설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기정	변경		
변경	-	도 로		◦ A=20,823㎡ → 15,431㎡(감 5,392㎡)	◦ 세부시설 현행화
변경	1-1	진입광장		◦ A=270㎡ → 203㎡(감 67㎡)	◦ 세부시설 현행화
변경	2-1	피크닉장		◦ 폐지 A=4,370㎡ → 0㎡	◦ 세부시설 현행화
변경	2-2	피크닉장		◦ 도면번호 2-2 → 2-1 A=2,485㎡ → 2,250㎡(감 235㎡)	◦ 세부시설 현행화
변경	2-3	야외무대		◦ 도면번호 2-3 → 2-2 A=1,800㎡ → 1,027㎡(감 773㎡)	◦ 세부시설 현행화
변경	2-4	전통 연못	전통 정자	◦ 도면번호 2-4 → 2-3	◦ 세부시설 현행화
신설	2-4	초화정원		◦ A=1,528㎡	◦ 이용객을 위한 포토존 조성
변경	3-1	오토캠핑장		◦ A=10,640㎡ → 10,458㎡(감 182㎡)	◦ 세부시설 현행화
변경	3-2	오토캠핑장		◦ A=1,535㎡ → 1,944㎡(증 409㎡) B=92㎡	◦ 세부시설 현행화 및 신규 조성 시설에 대한 반영
변경	3-3	오토캠핑장		◦ A=2,415㎡ → 2,827㎡(증 412㎡) B=250㎡	◦ 세부시설 현행화 및 신규 조성 시설에 대한 반영
변경	3-4	오토캠핑장		◦ A=2,190㎡ → 2,262㎡(증 72㎡) B=150㎡	◦ 세부시설 현행화
변경	3-5	오토캠핑장		◦ A=2,180㎡ → 2,423㎡(증 243㎡)	◦ 세부시설 현행화
신설	3-6	오토캠핑장		◦ A=9,416㎡	◦ 세부시설 현행화
신설	3-7	오토캠핑장		◦ A=1,188㎡	◦ 세부시설 현행화
신설	3-8	오토캠핑장		◦ A=2,994㎡	◦ 세부시설 현행화
변경	4-1	축구장		◦ A=2,755㎡ → 2,005㎡(감 750㎡)	◦ 세부시설 현행화
신설	4-2	농구장		◦ A=5,216㎡	◦ 세부시설 현행화
신설	4-3	체력단련장		◦ A=530㎡	◦ 세부시설 현행화

구 분	도면 번호	시설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기정	변경		
신설	4-4	체력단련장		◦ A=855㎡	◦ 세부시설 현행화
변경	5-1	주차장		◦ A=2,190㎡ → 2,025㎡(감 165㎡)	◦ 세부시설 현행화
변경	5-2	화장실	공동 취사장	◦ A=555㎡ → 238㎡(감 317㎡) B=110㎡ → 100㎡(감 10㎡)	◦ 세부시설 현행화
변경	5-3	공동 취사장	화장실	◦ A=225㎡ → 216㎡(감 9㎡)	◦ 세부시설 현행화
변경	5-4	공동취사장		◦ B=100㎡	◦ 세부시설 현행화
변경	5-5	공중 화장실	공용 화장실	◦ 명칭 변경	◦ 세부시설 현행화
변경	6-1	관리동		◦ A=8,512㎡ → 6,216㎡(감 2,296㎡) B=1,700㎡ → 275㎡(감 1,425㎡)	◦ 세부시설 현행화
변경	6-2	관리동		◦ 폐지 A=1,970㎡ → 0㎡	◦ 세부시설 현행화
신설	6-2	분리수거장		◦ A=215㎡	◦ 세부시설 현행화
신설	6-3	오수처리장		◦ A=246㎡	◦ 세부시설 현행화
신설	6-4	오수처리장		◦ A=1,120㎡	◦ 세부시설 현행화
변경	-	녹 지		◦ A=34,072㎡ → 22,109㎡ (감 11,963㎡)	◦ 세부시설 현행화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 실음 생략(비치 도서와 같음)

4. 관계도서는 영주시 영주호개발과 시설관리팀(054-639-4842)에 비치
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영주시 고시 제2025-179호

영주 휴천지구 도시개발구역(변경),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변경) 인가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영주시 고시 제2025-162호(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실시계획 변경)로 고시된 영주 휴천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3조, 제4조, 제17조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변경, 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 변경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조,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40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10일

영 주 시



I. 도시개발구역 및 개발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 영주 휴천지구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

가. 위치 r기정 : 경상북도 영주시 휴천동 산1-1번지 일원

↳변경 : 경상북도 영주시 휴천동 산1-8번지 일원(지적분할에 따른 지번 변경)

나. 면적 : 32,736㎡ → 32,663.1㎡, 감) 72.9㎡(지적확정측량에 따른 구적오차 정정)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목적 (변경없음)

가. 다가구주택 부지조성공사가 중단된 사업대상지 일원은 집중호우시 토사유출 우려와 보강토옹벽으로 도시경관 및 도시발전의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나.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계획적 개발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4.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없음)

가. 시행자 : 교보자산신탁 주식회사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65(서초동, 강남교보타워)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변경없음)

가. 시행기간 : 개발구역 지정일부터 공사완료공고일까지

나. 시행방식 : 도시개발법에 의한 수용·사용방식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변경)

구 분	면 적(m ²)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32,736	감) 72.9	32,663.1	100.0	
주 거 용 지	19,767	감) 85.6	19,681.4	60.3	
공동주택용지	19,767	감) 85.6	19,681.4	60.3	
도시기반시설용지	12,969	증) 12.7	12,981.7	39.7	
도 로	2,023	증) 32.7	2,055.7	6.3	
주 차 장	1,353	증) 1.4	1,354.4	4.1	2개소
공 원	4,745	감) 16.3	4,728.7	14.5	2개소
녹 지	4,014	감) 3.5	4,010.5	12.3	3개소
보 행 자 도 로	834	감) 1.6	832.4	2.5	
구역외 도로	508	-	508	-	중로2-31호선
	278	-	278	-	소로1-41호선
	3,040	-	3,040	-	중로2-20호선
	95	-	95	-	소로1-39호선
	970	-	970	-	소로1-휴1호선

변경사유 : 지적확정측량 반영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면적 변경

7. 국토교통부령(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및 토지소유자에 관한 사항)으로 정하는 토지명세 : [붙임 1]

8.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도시개발구역 밖에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가. 사업지 동측 도로 보도설치 및 노면포장

구 분	위 치	시 설 규 모	비 고
보도 및 노면포장	사업지 동측 중로2-31호선	· 연장 : 38m, 폭원 : 15m	시 행 자 비용부담
	사업지 동측 소로1-41호선	· 연장 : 28m, 폭원 : 10m	시 행 자 비용부담
	사업지 동측 중로2-20호선	· 연장 : 200m, 폭원 : 15m	시 행 자 비용부담
	사업지 동측 소로1-39호선	· 연장 : 8m, 폭원 : 10m	시 행 자 비용부담

나. 사업지 서측 도로 노면포장

구 분	위 치	시 설 규 모	비 고
노면포장	사업지 서측 소로1-휴1호선 (노선번호 반영)	· 연장 : 156m, 폭원 : 6m	시 행 자 비용부담

9. 법 제11조 제8항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신청기간
(변경없음)

-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

10.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가. 열람기간 : 시민열람과 편의를 위해 다음의 장소에 관련도서를 비치하
고 고시한 다음날로부터 14일간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 공람

나. 장소 : 영주시청 도시과(☎ 054-639-6672)

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
에서 열람 가능

11.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

가. 도시개발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①	영주 휴천지구 도시개발구역	휴천동 산1-8번지 일원	32,736	감) 72.9	32,663.1	

■ 도시개발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위 치	면 적(㎡)	변 경 사 유
변경	①	휴천동 산1-8번지 일원	• 면적 감소 32,736㎡ → 32,663.1㎡ 감) 72.9㎡	• 지적분할 및 지적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구적오차 정정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①	휴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휴천동 산1-8번지 일원	32,736	감) 72.9	32,663.1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위 치	면 적(㎡)	변 경 사 유
변경	①	휴천동 산1-8번지 일원	• 면적 증가 32,672㎡ → 32,736㎡ 증) 64㎡	• 지적분할 및 지적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구적오차 정정

II.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1. 사업의 명칭 : 영주 휴천지구 도시개발사업

2. 사업의 목적 (변경없음)

-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건전한 도시발전 도모

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

- 위치 □기정 : 경상북도 영주시 휴천동 산1-1번지 일원
 ↳변경 : 경상북도 영주시 휴천동 산1-8번지 일원(지적분할에 따른 지번 변경)
- 면적 : 32,736㎡ → 32,663.1㎡, 감) 72.9㎡(지적확정측량에 따른 구적오차 정정)

4. 시행자 (변경없음)

- 시행자 : 교보자산신탁 주식회사
-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65(서초동, 강남교보타워)

5. 시행기간 (변경없음)

- 도시개발구역 지정일 ~ 공사완료 공고일

6. 시행방식 (변경없음)

- 수용 또는 사용방식

7.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의 결정내용 : [붙임 2]

8. 인가된 실시계획에 관한 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가. 열람기간 : 시민열람과 편의를 위해 다음의 장소에 관련도서를 비치하고

고시한 다음날로부터 14일간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 공람

나. 장소 : 영주시청 도시과(☎ 054-639-6672)

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

에서 열람 가능

9. 법 제1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사항 : 게재생략

[붙임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명세서

○ 지적확정측량 반영전 편입토지조서

연번	구분	위치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면적(㎡)			주소	소유자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1	기정	휴천동	1	전	813	813	-	813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65 (서초동, 강남교보타워)	교보자산신탁(주)	
2	기정	휴천동	2	대	433	433	-	433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65 (서초동, 강남교보타워)	교보자산신탁(주)	
3	기정	휴천동	158-1	대	714	714	-	714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65 (서초동, 강남교보타워)	교보자산신탁(주)	
4	기정	휴천동	160	대	770	770	-	770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65 (서초동, 강남교보타워)	교보자산신탁(주)	
5	기정	휴천동	161-1	전	648	85	감) 3	82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65 (서초동, 강남교보타워)	교보자산신탁(주)	지적분할
	변경	휴천동	161-3	전	82						
6	기정	휴천동	1169	전	1,302	1,302	-	1,302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65 (서초동, 강남교보타워)	교보자산신탁(주)	
7	기정	휴천동	1169-1	임	7,348	7,348	-	7,348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65 (서초동, 강남교보타워)	교보자산신탁(주)	
8	기정	휴천동	산1-1	임	9,755	9,468	감) 30	9,438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65 (서초동, 강남교보타워)	교보자산신탁(주)	지적분할
	변경	휴천동	산1-8	임	9,438						

연번	구분	위치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면적(㎡)			주소	소유자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9	기정	휴천동	산1-3	임	9,830	9,779	감) 19	9,760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65 (서초동, 강남교보타워)	교보자산 신탁(주)	지적 분할
	변경	휴천동	산1-9	임	9,760						
10	기정	휴천동	산1-5	임	238	238	-	238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65 (서초동, 강남교보타워)	교보자산 신탁(주)	
11	기정	휴천동	산1-6	임	1,243	1,035	증) 25	1,060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65 (서초동, 강남교보타워)	교보자산 신탁(주)	지적 분할
	변경	휴천동	산1-10	임	1,060						
12	기정	휴천동	산2-3	임	1,170	70	감) 8	62	-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로21길 23, 809호	남간서당, (주)에스제 이산업개 발	지적 분할
	변경	휴천동	산2-10	임	62						
13	기정	휴천동	산2-10	임	387	387	-	387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65 (서초동, 강남교보타워)	교보자산 신탁(주)	
14	기정	하망동	420-18	임	200	200	-	200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65 (서초동, 강남교보타워)	교보자산 신탁(주)	
15	기정	하망동	524-7	도	28	21	증) 1	22	-	영주시	지적 분할
	변경	하망동	524-26	도	22						
16	기정	하망동	524-24	임	73	73	-	73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65 (서초동, 강남교보타워)	교보자산 신탁(주)	
계	기정	16필지			34,952	32,736	감) 34	32,702			
	변경				32,702						

○ 지적확정측량 반영후 편입토지조사

연번	읍면동	지번	지목	면적(㎡)		비 고
				공부	편입	
1	휴천동	2055	주차장	705.4	705.4	주차장23
2	휴천동	2056	공원	3,677.7	3,677.7	어린이공원
3	휴천동	2057	대지	19,681.4	19,681.4	공동주택
4	휴천동	2058	주차장	649.0	649.0	주차장22
5	휴천동	2059	공원	1,051.0	1,051.0	소공원
6	휴천동	2060	공원	711.6	711.6	제4호 경관녹지
7	휴천동	2061	공원	725.2	725.2	제2호 경관녹지
8	휴천동	2062	공원	2,573.7	2,573.7	제3호 경관녹지
9	휴천동	2063	도로	623.2	623.2	소로1-휴1
10	휴천동	2064	도로	832.4	832.4	소로3-B
11	휴천동	2065	도로	854.9	854.9	중로2-A
12	휴천동	2066	도로	2.1	2.1	중로2-31
13	휴천동	2067	도로	288.2	288.2	중로2-20
14	하망동	757	도로	191.9	191.9	중로2-A
15	하망동	758	도로	70.5	70.5	중로2-31
16	하망동	759	도로	24.9	24.9	중로2-A
계				32,663.1	32,663.1	

[붙임 2]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의 결정내용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m ²)			구 성 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32,736	감) 72.9	32,663.1	100.0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20,051	감) 81.4	19,969.6	61.1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12,685	증) 8.5	12,693.5	38.9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 도 지 역		면 적 (m ²)	용적률	변 경 사 유
		기 정	변 경			
①	휴천동 산1-9번지 일원	제2종일반 주거지역	제2종일반 주거지역	81.4	250% 이하	• 지적분할 및 지적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구적오차 정정
②	휴천동 산1-8번지 일원	자연녹지 지역	자연녹지 지역	8.5	100% 이하	• 지적분할 및 지적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구적오차 정정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1	휴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영주시 휴천동 산1-8번지 일원	32,736	감) 72.9	32,663.1	경고 제2020-454호 (2020.12.17.)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위 치	면 적(㎡)	변 경 사 유
변경	①	휴천동 산1-8번지 일원	• 면적 감소 32,736㎡ → 32,663.1㎡ 감) 72.9㎡	• 지적분할 및 지적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구적오차 정정

3)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교통시설

○ 도로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20	15~18 (3)	국지 도로	288 (84)	중로2-2	소로1-41	일반 도로	-	영고 제23호 (2001.1.20)	
기정	중로	2	A	15	국지 도로	60	소로1-41	휴천동 산1-9	일반 도로	-	영고 제2022-22호 (2022.3.14.)	
기정	중로	2	31	15 (4)	국지 도로	233 (17)	소로1-70	소로1-41	일반 도로	-	영고 제2022-22호 (2022.3.14.)	
기정	소로	1	휴1	10 (4)	국지 도로	156 (140)	중로2-2	소로3-96	일반 도로	-	영고 제2022-22호 (2022.3.14.)	
기정	소로	3	B	4~5	특수 도로	172	중로2-A	소로3-A	보행 자전 용 도로	-	영고 제2022-22호 (2022.3.14.)	

주 : () 안은 구역 내 구간임

○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변경	㉔	주차장	노외 주차장	휴천동 산1-9번지 일원	651	감) 2.0	649.0	영고 제2022-22호 (2022.3.14.)	
변경	㉕	주차장	노외 주차장	휴천동 산1-8번지 일원	702	증) 3.4	705.4	영고 제2022-22호 (2022.3.14.)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㉔	주차장	• 면적 감소 - A = 651㎡ → 649.0㎡ 감) 2.0㎡	• 지적확정측량 반영에 따른 구적오차 정정
㉕	주차장	• 면적 증가 - A = 702㎡ → 705.4㎡ 증) 3.4㎡	• 지적확정측량 반영에 따른 구적오차 정정

□ 공간시설

○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 원 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변경	A	제1호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휴천동 160번지 일원	3,691	감) 13.3	3,677.7	영고 제2022-22호 (2022.3.14.)	
변경	㉖	제1호 소공원	소공원	휴천동 1169번지 일원	1,054	감) 3.0	1,051.0	영고 제2022-22호 (2022.3.14.)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공원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A	제1호 어린이공원	• 면적 감소 - A = 3,691㎡ → 3,677.7㎡ 감) 13.3㎡	• 지적확정측량 반영에 따른 구적오차 정정
㉔	제1호 소공원	• 면적 감소 - A = 1,054㎡ → 1,051.0㎡ 감) 3.0㎡	• 지적확정측량 반영에 따른 구적오차 정정

○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㉔	녹지	경관 녹지	휴천동 1169-1번지 일원	723	증) 2.2	725.2	영고 제2022-22호 (2022.3.14.)	
변경	㉔	녹지	경관 녹지	휴천동 산1-9번지 일원	2,579	감) 5.3	2,573.7	영고 제2022-22호 (2022.3.14.)	
변경	㉔	녹지	경관 녹지	휴천동 산1-8번지 일원	712	감) 0.4	711.6	영고 제2022-22호 (2022.3.14.)	

○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㉔	녹지	• 면적 증가 - A = 723㎡ → 725.2㎡ 증) 2.2㎡	• 지적확정측량 반영에 따른 구적오차 정정
㉔	녹지	• 면적 감소 - A = 2,579㎡ → 2,573.7㎡ 감) 5.3㎡	• 지적확정측량 반영에 따른 구적오차 정정
㉔	녹지	• 면적 감소 - A = 712㎡ → 711.6㎡ 감) 0.4㎡	• 지적확정측량 반영에 따른 구적오차 정정

나. 가구 및 획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공동주택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m ²)			위 치	획 지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면 적(m ²)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	19,767	감)85.6	19,681.4	-	19,767	감)85.6	19,681.4	
BL 1	BL 1	19,767	감)85.6	19,681.4	휴천동 2번지 일원	19,767	감)85.6	19,681.4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번호	가구번호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BL 1	BL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적 감소 - A = 19,767m² → 19,681.4m² 감) 85.6m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확정측량 반영에 따른 구적오차 정정

다.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 공동주택용지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BL 1	BL 1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 이	•21층 이하(필로티 제외)
		배 치	•관계법령에 의한 인동거리 유지
		형 태	•전체적인 형태 및 외관은 통일성 있게 계획
		색 채	•주변 경관 및 건축물과의 조화를 이루는 배색으로서 자연친화적 색채를 권장
		건축선	-

4) 공원조성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제1호 어린이공원

□ 총괄조서

구 분	부지면적(㎡)			시설면적 (㎡)	건 축 면 적 (㎡)		공작물
	기정	변경	변경후		바닥면적 (㎡)	연면적(㎡)	
총 계	3,691.00	감) 13.3	3,677.70	1,803.93	-	-	23
기반시설	457.30	-	457.30	457.30	-	-	
도 로	184.47	-	184.47	184.47	-	-	
광 장	272.83	-	272.83	272.83	-	-	
조경시설	8.00	-	8.00	8.00	-	-	
휴양시설	66.35	-	66.35	66.35	-	-	4
유희시설	1,107.53	-	1,107.53	1,107.53	-	-	12
운동시설	164.75	-	164.75	164.75	-	-	7
교양시설	-	-	-	-	-	-	
편익시설	-	-	-	-	-	-	
관리시설	-	-	-	-	-	-	
기타시설	-	-	-	-	-	-	
녹지 및 기타	1,887.07	감) 13.3	1,873.77	-	-	-	

변경사유 : 지적확정측량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 세부시설조사

구분	시설명	부호	부지면적(㎡)		시설 면적 (㎡)	건축물(㎡)		건물동수 (공작물)	비고
			기정	변경		바닥 면적	연면적		
총 계			3,691.00	3,677.70	1,803.93	-	-	23	
시설 소계			1,803.93	1,803.93	1,803.93	-	-	23	
기반 시설	소계		457.30	457.30	457.30	-	-		
	도로		184.47	184.47	184.47	-	-		
	광장	가	226.00	226.00	226.00	-	-		
나		46.83	46.83	46.83	-	-			
휴양 시설	소계		66.35	66.35	66.35	-	-	4	
	휴양공간	다	66.35	66.35	66.35	-	-		
	쉐이드파고라	①	-	-	-	-	-	1	
	아트벤치	②	-	-	-	-	-	1	
	스윙벤치	③	-	-	-	-	-	2	
조경 시설	소계		8.00	8.00	8.00	-	-		
	앉음벽	라	8.00	8.00	800	-	-		20.00m
	안전난간	마	-	-	-	-	-		260.5m
유희 시설	소계		1,107.53	1,107.53	1,107.53	-	-	12	
	어린이놀이터	바	1,107.53	1,107.53	1,107.53	-	-		
	조합놀이대	④	-	-	-	-	-	1	
	마운딩슬라이드	⑤	-	-	-	-	-	1	
	짚라인	⑥	-	-	-	-	-	1	
	회전놀이대	⑦	-	-	-	-	-	1	
	나뭇잎통과하기	⑧	-	-	-	-	-	1	
	오색회전놀이대	⑨	-	-	-	-	-	1	
	나무시소	⑩	-	-	-	-	-	2	
	흔들놀이대	⑪	-	-	-	-	-	2	
	티하우스	⑫	-	-	-	-	-	1	
	티테이블	⑬	-	-	-	-	-	1	
	운동시설	소계		164.75	164.75	164.75	-	-	7
운동공간		사	164.75	164.75	164.75	-	-		
어린이운동기구		⑭	-	-	-	-	-	3	
생활체육시설		⑮	-	-	-	-	-	4	
녹지 및 기타시설	소계		1,887.07	1,873.77	-	-	-		
	녹지 및 기타	아	1,887.07	1,873.77	-	-	-		

□ 도로 결정조서 (변경없음)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합 계				55.75	184.47				
산책로	소 계			55.75	184.47				
	산	1	5.2	3.70	18.43	진입로	보행자도로	어린이공원	
		2	3.0	35.00	106.02	산책로	진입계단	어린이공원	
		3	6.3	1.85	11.65	산책로	외부주차장	어린이공원	
		4	3.0	13.2	39.60	산책로	상부광장	하부광장	
		5	4.3	2.00	8.77	산책로	단지외부	어린이공원	

나. 제1호 소공원

□ 총괄조서

구 분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면적(㎡)		공작물
	기정	변경	변경후		바닥면적(㎡)	연면적(㎡)	
총 계	1,054.00	감) 3.00	1,051.00	174.16	-	-	6
기반시설	122.14	-	122.14	122.14	-	-	
도로	88.51	-	88.51	88.51	-	-	
광 장	33.63	-	33.63	33.63	-	-	
조경시설	14.04	-	14.04	14.04	-	-	
휴양시설	-	-	-	-	-	-	
유희시설	-	-	-	-	-	-	
운동시설	37.98	-	37.98	37.98	-	-	4
교양시설	-	-	-	-	-	-	
편익시설	-	-	-	-	-	-	
관리시설	-	-	-	-	-	-	
기타시설	-	-	-	-	-	-	
녹지 및 기타	879.84	감) 3.00	876.84	-	-	-	2

변경사유 : 지적확정측량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 세부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부호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건물동수(공작물)	비고
			기정	변경		바닥면적	연면적		
총 계			1,054.00	1,054.00	174.16	-	-	6	
시설 소계			174.16	174.16	174.16	-	-	6	
기반 시설	소계		122.14	122.14	122.14	-	-		
	도로		88.51	88.51	88.51	-	-		
	광장	가	33.63	33.63	33.63				
조경 시설	소계		14.04	14.04	14.04	-	-		
	앞음벽	나	5.29	5.29	5.29	-	-		
	디딤석	다	8.75	8.75	8.75	-	-		
운동 시설	소계		37.98	37.98	37.98	-	-		
	운동공간	라	37.98	37.98	37.98	-	-		
	생활체육시설	①	-	-	-	-	-	4	
녹지 및 기타 시설	소계		879.84	876.84	-	-	-		
	녹지 및 기타	마	879.84	876.84	-	-	-		
	평의자	②	-	-	-	-	-	2	

□ 도로 결정조서 (변경없음)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합 계				31.95	88.51				
산책로	소 계			31.95	88.51				
	산	1	3.0	19.72	70.98	진입로	중로2-10	공동주택	
		2	1.2	12.23	17.53	산책로	산책로-1	운동공간	

영주시 고시 제2025-180호

영주 도시관리계획(도로 등)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영주 도시관리계획(도로 등)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10일

영 주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 규정에 의한 기반 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사항이며, 도시계획시설의 합리적인 정비와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고자함.
- 또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작성·고시 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 하고자 함.

2. 도시관리계획(도로 등)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정	종점	사용 형태	최초결정일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2	350	8	국지도로	587	휴천동 1107	이산면 원리 산76	일반 도로	영고 제166호 (21.11.22)
변경	소로	2	350	8	국지도로	580	휴천동 1107	이산면 원리 산76	일반 도로	영고 제166호 (21.11.22)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결정(신설) 사유
소로2-350	소로2-350	·연장 변경 -587m→580m(감 7m) ·도로사면부 포함	·도로개설을 위한 법면부지 포함

3. 도시관리계획(도로 등)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 붙임 참조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www.eu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4. 이해관계인은 영주시청 도시과(054-639-6672)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끝.

경산시 고시 제2025-147호

경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완충녹지) 결정 (부분)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도로, 완충녹지) 결정이 일부 또는 전부 실효되었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10일

경 산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의 규정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것으로, 같은 법 제48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의 실효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작성·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하고자 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1) 도 로

가)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 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폐지	중로	1	자9	20	보조 간선 도로	1,005	중로1-자1 (북사리 309-3)	중로2-자12 (북사리 489)	일반 도로	-	경산시고시 제2005-63호 (2005.11.9.)	
폐지	중로	1	진10	20	보조 간선 도로	340	소로2-진99 (당곡리산4-3)	대로3-진2 (황제리 244-3)	일반 도로	-	경산시고시 제2005-64호 (2005.11.9.)	
폐지	중로	2	압2	15	보조 간선 도로	499	중로2-진3 (의송리 76-1)	중로1-진12 (가야리 41)	일반 도로	-	경산시고시 제2005-64호 (2005.11.9.)	
기정	중로	2	자6	15	집산 도로	458	중로1-자6 (단북리 59)	중로2-자2 (남촌리 48)	일반 도로	-	경산시고시 제2005-63호 (2005.11.9.)	
변경	중로	2	자6	15	집산 도로	113	소로2-자28 (단북리 109-2)	중로2-자2 (남촌리 48)	일반 도로	-	"	
기정	중로	3	자6	12	집산 도로	525	중로1-자6 (단북리 265)	중로2-자2 (남촌리 88)	일반 도로	-	경산시고시 제2005-63호 (2005.11.9.)	
변경	중로	3	자6	12	집산 도로	173	중로1-자6 (단북리 265)	소로2-자28 (단북리261-2)	일반 도로	-	"	
기정	중로	3	진6	12	집산 도로	671	중로2-진8 (평평사리560-1)	중로3-진7 (평평사리817-3)	일반 도로	-	경산시고시 제2005-63호 (2005.11.9.)	
변경	중로	3	진6	6~12	집산 도로	671	중로2-진8 (평평사리560-1)	중로3-진7 (평평사리817-3)	일반 도로	-	"	
폐지	소로	2	진A1	8	집산 도로	245	소로2-진74 (봉회리184-2)	중로3-진4 (봉회리127)	일반 도로	-	경산시고시 제2005-64호 (2005.11.9.)	

■ 도로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서
중로1-자9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선 폐지 B=20m L=1,005m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계획시설사업 미시행 구간 실효로 인한 노선 폐지
중로1-진1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선 폐지 B=20m L=340m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계획시설사업 미시행 구간 실효로 인한 노선 폐지
중로2-압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선 폐지 B=15m L=499m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계획시설사업 미시행 구간 실효로 인한 노선 폐지
중로2-자6	중로2-자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장 축소 B=15m L=458m → 113m 감)345m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계획시설사업 미시행 구간 실효로 인한 도로 연장 축소
중로3-자6	중로3-자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장 축소 B=15m L=525m → 173m 감)352m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계획시설사업 미시행 구간 실효로 인한 도로 연장 축소
중로3-진6	중로3-진6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폭원 축소 B=12m → 6~12m L=671m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계획시설사업 미시행 구간 실효로 인한 도로 일부구간 폭원 축소
소로2-진a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선 폐지 B=12m L=245m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계획시설사업 미시행 구간 실효로 인한 노선 폐지

■ 실효일자 : 2025년 11월 9일

나. 공간시설

1) 완충녹지

가) 완충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94	녹지	완충녹지	신상리 1008-3 일원	170,397	감) 170,397	-	경상북도고시 제2005-325호 (2005.11.2.)	

■ 완충녹지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94	녹지 (완충녹지)	• 완충녹지 폐지 -A = 170,397㎡	• 도시계획시설사업 미시행 구간 실효로 인한 완충녹지 폐지

■ 실효일자 : 2025년 11월 2일

3. 실효사유 : 도시계획시설사업 미 시행

4.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 및 지형도면 등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5. 관계도서는 경산시 도시과(☎ 053-810-551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청도군 고시 제2025-109호

청도 군관리계획(환경기초시설:하수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청도 군관리계획(환경기초시설:하수도)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청도 군계획시설(환경기초시설:하수도)을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10일

청 도 군 수

1. 군관리계획(환경기초시설:하수도)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가. 환경기초시설

1) 하수도

가) 하수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하수종말 처리장	풍각 공공 하수처리시설	풍각면 송서리 75번지 일대	4,037	증) 2,890	6,927	경상북도 고시 제2003-445호 (2003.12.22.)	생산 녹지 지역

■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1	풍각 공공하수처리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명 변경 및 면적정정, 면적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명 : 하수종말처리장 → 풍각 공공하수처리시설 - A = 4,037㎡ → 6,927㎡ (증) 2,890㎡ ※토지대장반영 면적정정 : 감) 149㎡ 금회 확장면적 : 증) 2,939㎡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북면 하수관로정비사업 등 하수처리구역 확대에 의한 발생하수량 증가에 따른 풍각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도시계획시설규칙」, 「하수도법」 용여정의 및 지역명칭 반영에 따른 시설명 변경

2. 청도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도서 : 붙임 도면(계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3. 관계도서는 청도군청 미래혁신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며, 기타 문의사항은 청도군 물관리사업소(054-370-2346) 및 청도군청 미래혁신도시과(054-370-23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도군 고시 제2025-110호

청도 군관리계획(방재시설:유수지)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청도 군관리계획(방재시설:유수지)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청도 군계획시설(방재시설:유수지)을 결정하고, 같은 법 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10일

청 도 군 수

1. 군관리계획(시설: 우수지)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가. 방재시설

1) 우수지

가) 우수지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1	우수지	저류시설	청도군 청도읍 고수리 1039-1 일원	3,875	감)128	3,747	청도군고시제 2011-9호 (2011.3.24.)	-
신설	고수1	우수지	저류시설	청도군 청도읍 월곡리 1030-1 일원	-	증)2,210	2,210	-	
폐지	고수1	우수지	저류시설	청도군 청도읍 고수리 1035-12 일원	1,970	감)1,970	-	청도군 고시 제2024-97호 2024.07.29	

■ 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변경	1	우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지(저류시설) 시설 면적변경 · 3,875㎡ → 3,747㎡ · 감)1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도빗물펌프장 설치에 따른 시설면적의 감소
신설	고수1	우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지(저류시설) 신설 · 위치: 청도군 청도읍 월곡리 1030-1 일원 · 면적: 2,2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빗물펌프장의 신설을 통하여 집중호우 시 배수지역의 침수예방 및 공공수역의 수질을 개선하여 주민 생활편의를 증대하고자 함.
폐지	고수1	우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지(저류시설) 폐지 · 위치: 청도군 청도읍 월곡리 1035-12 일원 · 면적: 1,9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곡리 빗물펌프장 이전에 따른 기존 고수리 빗물펌프장의 폐지

2.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세부조서, 도면 및 지형도면** : 도면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3. **관계도서** 등은 청도군청 미래혁신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며, 기타 문의사항은 청도군청 미래혁신도시과(☎054-370-23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령군 고시 제2025-1540호

고령 군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경미한 변경), 실시계획(변경) 인가 및 지형도면 등 고시

고령군 다산면 송곡리 1040-4번지 일원 군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88조,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을 인가·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10일

고령군



1.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으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 또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작성·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 하고자 함

2. 군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조서

1) 폐기물처리시설

구분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폐기물 처리시설	다산면 송곡리 1040-4번지 일원	5,441	증) 8	5,449	2007.4.16	

■ 결정(변경) 사유서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폐기물 처리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전환 측량 결과 면적 반영 및 현황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선형 일부 정정 - A = 5,441㎡ → A = 5,449㎡ (증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전환 측량 결과 면적 반영(선형변경 없음) • 현황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선형 일부 정정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3. 실시계획(변경) 인가 내용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고령군 다산면 송곡리 1040-4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군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사업
- 명 칭 : (주)씨케이 폐기물처리시설 증축사업

3) 사업의 규모(변경)

사업종류	사업의 명칭	사업의 위치	사업의 규모		사업기간	비 고
군계획시설 사업	(주)씨케이 폐기물처리시설 증축사업	다산면 송곡리 1040-4번지 일원	기정	5,441㎡	인가일로부터~ 2025.12.31	등록전환 측량 결과 면적 반영 및 현황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선형 일부 정정
			변경	5,449㎡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주)씨케이 대표 허승호, 김남운
- 주 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명곡로 30, 302동 1605호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로7길 10, 1103동 2002호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 권리자의 성명 · 주소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33,046	33,046	5,441	5,449	
1	다산면 송곡리	1040-4	잡	1,524	5,189	1,524	5,189	주식회사 씨케이
2	다산면 송곡리	1040-5	잡	3,274	-	3,274	-	주식회사 씨케이
3	다산면 송곡리	1040-6	잡	248	-	248	-	주식회사 씨케이
4	다산면 송곡리	1040-7	잡	19	-	19	-	주식회사 씨케이
5	다산면 송곡리	1040-8	잡	124	-	124	-	주식회사 씨케이
6	다산면 송곡리	산104-6	임	213	-	25	-	주식회사 씨케이
7	다산면 송곡리	산104	임	27,644	27,857	227	260	주식회사 씨케이

6)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4. 기타 사항 문의

- 1) 도시과 도시개발팀(☎054-950-67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칠곡군 고시 제2025-189호

칠곡 군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칠곡군 왜관읍 아곡리 670-5번지 일원의 칠곡 종합운동장 다목적체육관 및 실내테니스장 조성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칠곡 군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10일

칠 곡 군 수

1.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반 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칠곡 종합운동장 다목적체육관 및 실내테니스장 조성을 위한 군계획시설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으로 토지의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하고자 함.

2. 군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조서

가. 공공·문화체육시설

1) 체육시설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	운동장	체육시설	종합 운동장	아곡리 670-5번지 일원 (중로1-9호선변)	192,740	-	192,740	칠고 제1호 (1999.01.20)	-

◦ 세부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세부시설명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92,740	-	192,740		
소계			체육시설용지			45,925	증) 20,495	66,420		
변경	5	1	주경기장	주경기장	아곡리 670-5번지 일원	32,270	증) 12,643	44,913	경고 제137호 (2003.04.28)	
변경	10	1	휴게공간	주경기장	아곡리 749-3번지 일원	469	감) 469	-	경고 제137호 (2003.04.28)	
변경	8	2	보조 경기장	보조 경기장	아곡리 670-5번지 일원	6,730	증) 174	6,904	경고 제137호 (2003.04.28)	
변경	2	3	테니스장	테니스장	아곡리 670-5번지 일원	6,200	증) 6,355	12,555	경고 제249호 (2000.10.26)	
변경	9	3	관리동	테니스장	아곡리 670-5번지 일원	256	감) 256	-	경고 제137호 (2003.04.28)	
신설	-	4	다목적 체육관	다목적 체육관	아곡리 670-5번지 일원	-	증) 2,048	2,048		
소계			기반시설용지			64,074	감) 9,387	54,687		
변경	1	5	진입광장	진입광장	아곡리 670-5번지 일원	3,659	증) 748	4,407	경고 제137호 (2003.04.28)	
변경	3	6	광장	광장	아곡리 670-5번지 일원	30,360	감) 12,443	17,917	경고 제249호 (2000.10.26)	
변경	6	7	주차장	주차장	아곡리 670-5번지 일원	13,283	증) 1,564	14,847	경고 제137호 (2003.4.28)	
변경	7	8	도로	도로	아곡리 670-5번지 일원	16,772	증) 744	17,516	경고 제137호 (2003.04.28)	
소계			녹지용지			82,741	감) 11,108	71,633		
변경	4	9	녹지	녹지	아곡리 670-5번지 일원	82,741	감) 11,108	71,633	경고 제249호 (2000.10.26)	

◦ 세부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세부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5	1	주경기장	주경기장	·면적 변경 ·A=32,270㎡ → 44,913㎡ 증) 12,643㎡	·시설 정형화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광장 일부 및 휴게공간을 주경기장으로 변경
10	1	휴게공간	주경기장	·시설명 변경 ·A=469㎡ → 0㎡ 감) 469㎡	·시설 정형화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휴게공간을 주경기장으로 변경
8	2	보조 경기장	보조 경기장	·면적 변경 ·A=6,730㎡ → 6,904㎡ 증) 174㎡	·시설 정형화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광장 및 녹지 일부를 보조경기장으로 변경
2	3	테니스장	테니스장	·면적 변경 ·A=6,200㎡ → 12,555㎡ 증) 6,355㎡	·실내테니스장 조성과 시설 정형화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녹지·광장 일부 및 관리동을 테니스장으로 변경
9	3	관리동	테니스장	·시설명 변경 ·A=256㎡ → 0㎡ 감) 256㎡	·시설 정형화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동을 테니스장으로 변경
-	4	-	다목적 체육관	·신설 ·A=2,048㎡	·사계절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다목적체육관 건립
1	5	진입광장	진입광장	·면적 변경 ·A=3,659㎡ → 4,407㎡ 증) 748㎡	·시설 정형화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녹지 일부를 진입광장 으로 변경
3	6	광장	광장	·면적 변경 ·A=30,360㎡ → 17,917㎡ 감) 12,443㎡	·시설 정형화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광장을 주경기장 및 녹지로 변경
6	7	주차장	주차장	·면적 변경 ·A=13,283㎡ → 14,847㎡ 증) 1,564㎡	·다목적체육관 및 실내테니스장 조성에 따른 주차장 조성
7	8	도로	도로	·면적 변경 ·A=16,772㎡ → 17,516㎡ 증) 744㎡	·다목적체육관 및 실내테니스장 조성에 따른 도로 개설
4	9	녹지	녹지	·면적 변경 ·A=82,741㎡ → 71,633㎡ 감) 11,108㎡	·다목적체육관 및 실내테니스장 조성에 따른 녹지 감소와 시설 정형화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녹지 일부를 광장·진입광장·테니스장 및 보조경기장으로 변경

3. 군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도서 및 지형도면 등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eum.go.kr>) 에
서 열람 가능함.

**4. 관계도서는 칠곡군청 도시계획과(054-979-6815)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시 군

공 고

경주시 공고 제2025-3076호

경주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공사완료 공고 [용황지구 내 일부구간 보도확장 공사]

경주시 용강동 1409-1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이 완료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25. 11. 10.

경 주 시 장

1. 사업명칭 : 경주 도시계획시설(중로1-용1호선 일부구간 보도확장)사업
2. 사업위치 : 경주시 용강동 1409-1번지 일원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중로1-용1호선 일부구간 확장
(B=0.4~2.7m, L= 226m, A=309.2㎡)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가. 주 소 : 한국가스공사 사장 최연혜

나. 성 명 :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공단6로 122(대구경북지역본부)

5. 사업기간 : 2025. 6. 30. ~ 2025. 12. 31.

6. 공사완료일 : 2025년 9월 17일

7. 서류계재는 생략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경주시 도시계획과
(☎054-779- 64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